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호 3265

제안연월일: 2024. 8.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
국민연금법	2200304	박희승	2024. 6. 11.	2024. 7. 16.
일부개정법률안	2201908	신성범	2024. 7. 18.	2024. 8. 20.

-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 사제2소위원회(2024. 8. 23.)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 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1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4. 8. 26.) 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 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농어민의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는 2024년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다수의 농어업인 이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제7조).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제88조제3항"을 "제88조제4항"으로, "2024년"을 "2031년"으로 한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제88조제3항"을 "제88조제4항"으로, "2024년"을 "203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		
료 보조) 지역가입자인 농어업	료 보조)		
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u>제88조제3항</u> 의 개정규정에도	제88조제4항		
불구하고 <u>2024년</u> 12월 31일까	<u>2031년</u>		
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서 지원한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		
료 보조 특례) 사업장가입자	료 보조 특례)		
또는 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된 농어업인(당연적			
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			
자이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에게는 <u>제88조제3항</u> 에도			

불-	구하고 <u>2</u> 0	<u>)24년</u>	12월 3	31일까
기	본인이	부담할	연금」	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	서 대
통합	청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	어촌구조	개선특	· 별 회 계	ᅨ에서
지	원한다.			

<u>2031년</u>
<u>.</u>